코로나-19 진단검사 지원 안내(공공보건기관용)

<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, '20. 6. 26.(금) >

□ 사업개요

- (관련근거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제67조에 따라,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를 위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
- (지원대상) 코로나-19 대응지침(9판)에 따라 확진환자,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(사례정의에 부합되는 자)로 보건소에 신고 된 자
 - * 단, 집단유행과 연관되어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* 사례로 보건소에 신고된 자
 - * 공식 브리핑, 보도자료 및 코로나19 홈페이지(http://ncov.mohw.go.kr)를 통해 공개된 다중이용시설 방문자 등(지자체 필요에 따라 의뢰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부담, 검역소 등은 별도 신고 절차 없음)
- (지원범위) 보건소 및 검역소(임시검사시설포함)의 코로나-19 진단 검사비용
 - * 코로나19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타 예산은 보건소 자체예산으로 집행
- (사업방식) 질병관리본부는 수탁검사기관을 일괄 선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, 수탁검사기관과 계약 및 사후정산
 - (지자체) 사업 수행 편의에 따라 통보된 수탁검사기관에 검체 의뢰, 월별 검사실적을 질병관리본부에 제출

□ 진단 검사 위탁 지원 대상

- (의사환자)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냐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- (조사 대상 유증상자)
 -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
 -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
 -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나타난 자

-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 : 코로나19 유전자(PCR) 검출, 바이러스 분리
- 다음에 해당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적극적 검사 권고(조사대상 유증상자 1로 신고)
 - 가족(동거인)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
 -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(동거인), 친구, 지인과 접촉한 경우
 -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

\square 진단검사 절차 : 의사환자 등 확인 \rightarrow 검체채취 \rightarrow 진단검사 \rightarrow 결과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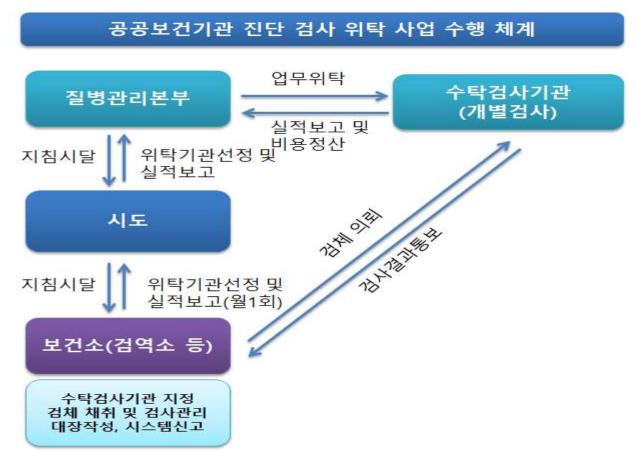
단계	의사환자 등 확인	검체채취	진단검사		보고 및 결과통보
수행기관	선별진료소 * 홈페이지 참고	보건소 검역소 (임시검사시설)	수탁 검사기관 (붙임2 참조)	\Rightarrow	검사기관 (질본, 검역소, 보건소)

□ 진단 검사 지원절차

<진단 검사비 지원 절차>

①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탁 검사 기관 리스트 송부 \rightarrow ② 보건소(검역소 등)에서는 자체 상황에 따라 수탁검사기관 선정 \rightarrow ③ 보건소 의사환자 등 등록 \rightarrow ④ 진단검사 실시(관리대장 기록) \rightarrow ⑤ 질병관리본부 보고 \rightarrow ⑤ 계약 금액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서 수탁검사기관과 일괄 정산

□ 사업 수행 절차



① 수탁검사기관 지정 및 보고

- 기 통지된 수탁검사기관 중 보건소 및 검역소 등 자체 판단에 따라 지정 * 검체 수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 중복(우선순위)하여 지정
- 지정 결과는 질병관리본부로 보고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

② 검사 의뢰 기관 결정 및 의뢰

- (수탁검사기관) 원칙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 및 검역소 등을 통해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기 지정한 수탁 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
- (보건환경연구원) 확진환자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접촉자의 검체 등 역학조사와 관련된 검사와 수탁검사기관의 검사의뢰가 어려운 경우(긴급)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

(단, 보건환경연구원은 국가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검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제외)

- ③ 검체 시험의뢰서 작성 및 검사의뢰 대장 작성
 - (검체 시험의뢰서) 코로나-19 대응지침 (9판) 서식 16참고
 - (검사의뢰대장) 추후 요청 공문 참조(보건소용, 검역소용)

④ 검사 결과 보고

- (음성) 수탁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보건소에 제출
- → 관할 보건소에서는 「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」에 검사결과 입력
- (양성) 수탁검사기관은 결과 확인 즉시 우선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(043-719-7979, 7790) 및 해당 보건소 및 검역소 등으로 유선 보고, 검사결과보고서는 팩스 또는 e-mail 전송
 - * 팩스: 043-719-9459, e-mail: kcdceoc@korea.kr
- → 관할 보건소에서는 「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」에 검사결과 입력
- (5) 수탁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의뢰비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사후 정산 처리
 - 보건소와 수탁검사기관은 검사 의뢰 실적에 대해 월 1회 질병관리 본부에 보고

□ 지원 금액

○ 질병관리본부와 수탁검사기관간 별도 계약된 단가에 따라 보건소, 수탁검사기관 실적을 비교하여 수탁검사기관에 일괄 사후 정산

붙임 1

질병관리본부 공고 제2020-507호, 2020. 6. 1.]

코로나-19 검사 가능 수탁검사기관

[수탁검사기관: 15개소]

	지역	기관명	주소	대표연락처
1		(의)삼광의료재단	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41길57	02-3497-5100
2	2 서울	씨젠의료재단 씨젠의원	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320	1566-6500
3		의료법인장원이로재단 유투의원	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68 장원빌딩	02-910-2100
4	(5)	한국필의료재단	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71	02-517-1728
5		BGK진단검사의학과의원*	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로 89 MG 빌딩 9층	070-4755-9780
6	부산 (1)	씨젠부산의원	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	1566-6500
7	인천 (1)	의료법인 이원의료재단	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291 (송도동 13 -4 9)	1600-0021
8		(재)서울의과학연구소(SCL)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13 흥덕1빨리 A동	1800-0119
9		녹십자의료재단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30번길 107	1566-0131
10	경기	랩지노믹스 진단검사의학과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375	031-628-0700
11	(6)	선함의원(에스큐랩, SQLab)	경도 왕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5321 중동 선험빌딩	031-283-9270
12		의료법인 신원의료재단	경기도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-8	1899-1510
13		티씨엠랩의원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7 초이스빌딩 2층,3층	031-698-2728
14	충북	한국간만협회 중앙점사위원	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393	043-292-1107
15	(2)	결핵연구원	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4로 1885	043-249-4950

^{*} 코로나-19 검사가능 기관이나, 질병관리본부와 계약 미체결로 해당 계획(6판)에 따른 비용지급에서는 제외(향후 계약 체결 시 별도 공문으로 안내 예정)